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안 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 년 08 월 04 일

청 원 인

성 명 : 이연희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이 연 희 (인) 외 12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_____
	성명 : 이연희
건명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08월 04일

소개의견

청원인 이연희는 제17회 정기회의 & 청소년 국회 정치법제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청원 체계화 및 법제화에 대한 국민청원위원회 법률 개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700건 꼴의 글로 국민들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목소리가 없었다고 느껴집니다. 국민청원이 생겨나니 갑자기 요구가 많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 있는 생활 속의 불편함, 개선사항, 슬픔, 분노 그리고 공포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대표한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법제화, 체계화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회성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후임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뒤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굳건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위원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11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13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 (글의 게시)

① 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를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서를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새로이 들어섰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하루 700여개에 육박하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론 형성의 장이 되기도 하고, 관심도 없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민청원은 대한민국이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청원에는 여러 결함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다른 계정을 이용해 청원에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계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된 여러 SNS계정들은 무제한 계정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계정을 악용하여 청원수를 늘리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다양한 계정을 이용해 여러 번 투표를 하는 경우가 존재해 중복투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분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적절한 청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드라마 SKY캐슬 20화 재촬영’, ‘번역가 박지훈의 번역업계 퇴출요구’ 같은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감정적인 토로에 불과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정적인 청원내용 또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외설적인 말이나 비속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정 단어 언급 시 그 단어를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청원, 또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을 검토한 후, 사유를 게시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청원을 삭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답변의 실효성이 저하되며 존속 여부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2년 동안 답변이 이루어진 청원의 수는 현재 109개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통한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은 미비하며 청원의 단계가 끝나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해결의 진행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자체의 문제들이 있고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등장한 체계이기 때문에 8개월 후 정권이 바뀌면 체계의 유지 여부가 확인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2. 주요골자

국민청원위원회법

제1장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청원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 청원을 수렴하고 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의식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인식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청원위원회의 설립과 중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국민의 청원 보호와 응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청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모든 정당에 대해 공평성과 비당파성을 갖고 국민의 청원에 응답하되, 각각의 시각과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여 수행한다.

제3조 (국민청원위원회의 독립성)

국민청원위원회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정치법제에 대해 간학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국민청원의 보호와 응답하는 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각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청원 보호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위원 지명권을 가진 사람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 (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무처)

① 부서의 업무를 보조할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부서)

① 각 부서는 정치외교부, 경제경기부, 민생복지부, 문화예술부, 인권부, 반려동물부로 이루어진다.

② 각 부서에 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부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각 부서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제10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부서(정치외교, 경제경기, 민생복지, 문화예술, 인권, 반려동물)에서 청원확인

2.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주제에 알맞지 않은 청원은 판단 후 배제

3. 각 부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운영위원회로 제출

4.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 및 답변을 작성

5. 각 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은 각부서의 부장이 국민에게 공표

6. 운영위원회의 판단 후 각 부서에서 답변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에 맞는 국가기관이 이행

7. 국가기관은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답변 및 의견 제출

8.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표

9. 각 부서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청원이나 범주에 없는 청원은 사무처에서 재정리 후 판단하여 각 부서에 제출

제11조 (요청)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요구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요청의 삭제)

위원회는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요청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일 때

2.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 때

3. 비속어, 성적 단어 등 누리집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때

4. 그 외 국민청원의 취지와 어긋날 때

제13조 (삭제 사유의 공지)

위원회는 글을 삭제할 때 사유를 첨부한 후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제14조 (글의 게시)

①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일정 수 이상의 청원 동의가 있어야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다.

②위에 따른 게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의 부장은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국가기관 등과의 협의)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 등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①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원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과 관행의 의견을 국가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

②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경우, 위원장이 의견을 국가기관에 전달한다. 과반수를 넘지 못한 안건의 경우, 각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한다.

③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주제 선정은 국민청원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그 의견서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서의 이행계획을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상임위원회는 국민에게 통지받은 청원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⑦청원기관은 국민에게 받은 청원을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원인 성명 : 이연희

청원인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청원인 전화번호 :